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1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1. 13.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11.자 등록세 10,200,000원, 지방교육세 2,04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8. 5. 28.자 취득세 10,380,540원, 농어촌특별세 1,038,0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1. [redacted]시 B 임야 38,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51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0,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20,000원, 등록세 10,200,000원, 지방교육세 2,040,000원을 신고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2. 11. 등록세 10,200,000원 및 지방교육세 2,040,000원을 납부하고, 2008. 5. 28.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0,380,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38,050원을 납부하였다(2008. 2. 11.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및 2008. 5. 28.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금액이 230,000,000원임에도 510,000,000원으로 거짓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3,8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5. 30.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과2586호).

라. 원고는 2012.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종전 510,000,000원에서 23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① 구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일정한 기간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점, ② 지방세기본법은 위와 같은 소멸시효 기간 및 수정신고제도 외에 경정청구 제도를 두고 있는 점, ③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세등 환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과오납금 반환청구의 소 등으로써 직접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참조). 한편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는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0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고는 원고로부터 신고행위를 의뢰받은 C 등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은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신고행위를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오인하고 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으며,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 이외에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C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C가 한 행위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므로, 이하 C가 한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의 행위로 표현한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230,000,000원임에도 5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에는 하자가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어떤 금액으로 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지 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계산 착오나 기재 실수 등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신고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원고가 2008. 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은 있고, 위와 같이 취득가액을 얼마로 신고할 지는 원고의 결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피고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뿐만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데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점,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것도 아닌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50772 판결 참조).

이 사건 신고가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판사 김정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토지 또는 건축물

제51조(과태료)

④ 제27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끝>